

2021년 스페이스살림 스타트업홍보관입점연장모집(4차)

1 모집 개요

- 모집규모: 0개사
- 신청기간: '21. 10. 15.(금) ~ 20.(수) 24:00까지
- 신청자격: 스페이스 살림 홍보관 2차 선발 기업 중 연장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
※ 필수 운영조건 충족한 기업에 한함
- 신청방법: 이메일 접수 (space@famost.co.kr)

모집공고 메일링 ▶ 지정서식 서류 확인 ▶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제출

□ 모집일정

모집기간	서류검토	서면심사	결과발표	계약체결
~10.20.(수)	10.21.(목)	10.22.(금)	10.25(월) 이후 개별안내	10.27.(수) ~10.29.(금)

□ 제출서류

제출시점	제출서류*
메일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점연장신청서(운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서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홍보관 VMD계획, 홍보 및 운영 계획 ※ 주별 최소 4시간 이상 유인 운영 및 자체 기획 홍보이벤트 2회 이상 진행 계획 포함 필수 • (선택)기업소개서(자유양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PDF 형식, 20페이지 이내, 신청자격과 심사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관련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• 사업조건 변경시 해당 서류 제출 (법인사업자)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기타 여성기업 확인자료, 법인등기부등본 (개인사업자)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(예비창업자) 주민등록 사본
최종 합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해당 시)

* 모든 서류는 지원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

2

계약 조건

- 입점기간: '21. 11. 1.~ '22. 2. 25.(금), 4개월
 ※ 추가 연장 입점 불가
- 사용요금: 7,191원/㎡ (월, 부가세포함) ※4개월분 선납
- 운영개시
 - 최종합격자는 합격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입주계약을 체결을 해야 하고, 15일 내 홍보관 운영 개시
 - 입주계약 만료시, 계약 만료일까지 원상복구 원칙(시설, 짐 이동 등)

3

운영 조건 및 지원항목

운영구분

운영 형태*	설명
매장형	• 제품, 서비스 B2C 판매
쇼룸형	• 제품, 서비스, 브랜드 B2C, B2B 홍보 및 판로 연계
체험형	• 제품, 서비스,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여 B2C 홍보

* 가장 가까운 운영형태로 선택하여 지원

운영조건

구분	내용
운영시간	-기본 (무인)운영시간: 월~토 8:00~21:00 -홍보관 안내데스크 1명 상주 시간: 화~토 10:00~21:00
필수운영조건	- 기업별 홍보 전담 인력 1인 이상, 주별 4시간 이상 운영(※협의가능) - 2회 이상 홍보 행사* 기획하여 운영 *홍보행사: 입주기업에서 기획하여 '스타트업홍보관' 내방객을 대상으로 상품, 서비스를 홍보하는 이벤트(기간, 방식 자율, 동일한 내용은 1회로 카운팅함)
운영 현황 공유	- 월별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(1page) -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(별도 안내)

지원 항목

항목	심사내용
홍보 지원	· 00만원 이내 인테리어 지원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매장VMD컨설팅(매장 전반, 제품 진열, 홍보물 제작 등)제공 · 스타트업 홍보관 입점기업 리플렛 제작 지원
보조 인력 상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홍보관 안내데스크 상주 직원 1인 배치하여 무인 운영 필요시 홍보관별 응대 지원 가능
입주기업 혜택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스톱 창업지원시설(스튜디오, 대관시설, 회의실, 돌봄 시설 이용가능) · 예비, 초기 기업 대상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(교육, 네트워킹 등)

4 선발 심사 개요

□ 평가대상

- 계약만료 예정인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중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기업
- 1차 서류 검토에서 적합기업으로 분류된 기업

□ 검토 및 심사기준

- 서류검토: 내부 적부 검토

구분	항목	검토내용
서류검토	적격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인 운영 빈도 확인(주당 4시간 이상) · 스타트업 홍보관에서의 2회 이상 이벤트 개최 여부

- 대면심사: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하여 서류 합격자 대상 대면심사, 총 평균 70점 이상 선발 및 고득점자 순 선순위 기업 선발

구분	항목	심사내용
대면심사	사업명확성	· 비즈니스 모델 명확성(사업아이템, 시장분석, 경쟁력 확보방안, 시장진입 전략 및 성과창출 방안 등)
	입점 활용성	· 스페이스 살림 홍보관 활용성 및 입주 적합성
	수행정도	· 홍보관 운영계획 대비 실현정도, 진행 이벤트 적절성 및 향후 지속성장성
	창업자 역량	·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

※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심사는 비대면 또는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

5 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종료 후 일정기간 보관 후 자체 폐기

- 재단이 통보하는 방법과 일정에 맞춰 사용료를 선납해야 함
- 기타 시설 이용 관련 사항은 스페이스 살림 규정 운영지침을 따름
- 선정 이후 지원 조건 불일치 시 자격발탈 될 수 있으며, 제출한 홍보관 운영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. 허위 운영 시 퇴거 통보할 수 있음

□ 스타트업 홍보관 운영 박미희 매니저, 권기혜 주임

- 이메일: space@famost.co.kr
- 전 화: 02-810-5235, 5238

[붙임1]

스타트업홍보관 입점연장신청서

2021년
입주연장신청(10월)

1. 일반현황

기업명				대표자명	
신청(담당자명)				담당자연락처	
창업아이템 소개				창업일자	
홍보관 운영형태		매장형, 소룸형, 체험형 중 택1		홈페이지 또는 홍보채널	
사 원 명 보	담당업무	이름	성별	연락처	메일주소

※홍보관 운영 관련 담당 팀원들의 정보 작성

2. 홍보관 운영계획안(' 21.7) 대비 실현 성과

주요 성과 개요 (2020.7. ~ 2021.10..)

- 2021년 7월부터 10월, 4개월 동안 스타트업 홍보관을 연계한 직·간접적 판로, 마케팅 실적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

3. 기업 주요 경영 성과

구분	현재 실적 (21.1.1.~9.30.기준)	목표 실적 (21.12.31 기준)	목표 달성율(%) (목표실적 대비 현재실적)
매출액(천원)	천원	천원	%
고용인력	2021.09.30기준 정규직:0명 /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단기근로:0명	2021.09.30기준 정규직:0명 /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단기근로:0명	%
홍보, 마케팅 판로 실적	2021.09.30기준 정규직:0명 /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단기근로:0명	2021.09.30기준 정규직:0명 /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단기근로:0명	%
기타 경영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유치, 지식재산권, 기술, 신용 보증 실적, 수상실적 또는 언론홍보 등 - 사업활동 내역(고객발굴, 제안, 계약진행 등) 		

※ 위 사업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

4. 향후 운영계획안

스타트업 홍보관 운영계획안(' 21.11.~ ' 22.2.)
<p>아래 순서 대로 작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스타트업 홍보관 VMD, 인테리어 계획안 2. 3차(' 21.7.~10.) 운영 결과 및 향후 반영 계획 사항 3. 홍보전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매장형, 체험형) 주요 판매 제품 또는 서비스 소개, 홍보전략 - (쇼룸형) 주요 홍보 제품 및 서비스 소개, 홍보전략 - (공통) 인력배치, 입점 기간 내 2회 이상 행사 계획안 <p>*홍보행사: 입주기업에서 기획하여 '스타트업홍보관' 내방객을 대상으로 상품, 서비스를 홍보하는 이벤트(기간, 방식 자율, 동일한 내용은 1회로 카운팅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. 출구전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점 종료(' 21. 2.)이후 사업 계획

상기와 같이 스타트업 홍보관 입점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1. 10. .

대표자: (인)

[붙임2]
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근거 지원 제외대상 업종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 유흥 주점업	56211
2	무도 유흥 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를 따름
 *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,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 711, 712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
731	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 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2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*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(46333), 모피제품도매업(46416, 46417 중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,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68223, 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